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특성 분석*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Management for Korean Journals

정경희 (Kyoung Hee Joung)**

김규환 (Gyuhwan Kim)***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1,890 KRF journ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by journal publis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32.6% of journals did not provide any copyright notice, 77.1% of 1,141 journals which gave copyright information with regulation documents did not specify the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o be transferred and most of the journals which owned copyright transferred from the author did not specify the permission needed to use their article. This study suggested that journal publishers establish the object and method for distribution of journal articles and then develop and publish their copyright policy suited to their own objective.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관리, 학술지, 오픈엑세스, 셀프아카이빙, 이용허락
copyright, copyright management, journal, open access, self-archiving, license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하였음.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하였음.

**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부교수(khjoung@hansung.ac.kr) (제1저자)

***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gyuhwan@jj.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12월 9일 ■ 최초심사일자: 2016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6년 12월 21일

■ 정보관리학회지, 33(4), 269-291, 2016. [http://dx.doi.org/10.3743/KOSIM.2016.33.4.269]

1. 서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나의 것인데 학술지에 발표한 후에도 내가 소유하는 것일까? 나는 한 번도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인 나의 것인가?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에는 논문제출과 동시에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 문구 하나로 나의 저작권은 학회로 양도되는 것일까? 만일 양도된 것이라면 나는 우리 대학의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 또는 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내 논문을 업로드할 수 없는 것일까?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는 모두 DBpia라는 영리업체의 원문DB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는데 학회는 이들 DB업체가 원문서비스를 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원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회는 이러한 비영리기관에서의 원문서비스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문 즉, 학술지의 저작권 규정이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는 연구자만이 아니라 사서, 출판사, 웹DB 업체 등 학술커뮤니케이션

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도 커다란 이슈이기 때문이다(Poor, 2008). 학회가 학술지를 출판하고 학회의 일반회원과 도서관 등의 단체회원이 정기구독하였던 인쇄본 중심의 출판환경에서는 저작권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 국내 학술지도 상업적인 원문DB 업체 혹은 비영리기관의 오픈엑세스 아카이브를 통하여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문서비스 기관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허락을 얻을 필요가 있었고, 학회는 이에 따라 논문투고자로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민간단체와 국가 차원에서 오픈엑세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의생명학 분야의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출판을 장려하고 있고 그 결과 KoreaMed Synapse¹⁾를 통해서 2016년 12월 기준 131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원문서비스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오픈엑세스코리아(Open Access Korea, 이하 OAK)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AK 사업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관 리포지토리를 보급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기준 32개 기관 리포지토리에서 549,559건의 오픈 콘텐츠가 OAK Portal²⁾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출판된 86종의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9,815편의 학술지 논문이 OAK Central³⁾을 통해 공개되

1) KoreaMed Synapse. Retrieved from <https://synapse.koreamed.org/>

2) OAK Portal. Retrieved from <http://www.oak.go.kr>

3) OAK Central. Retrieved from <http://central.oak.go.kr>

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같은 학술지 평가기관에서도 학술지 오픈엑세스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술지에 대한 오픈엑세스 출판과 기관리포지토리가 확산될수록 논문을 출판하려는 연구자 특히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들에게 학술지의 저작권 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이재민, 2005; 홍재현, 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는 그다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학술논문의 원문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술논문과 저작권의 관계

어떠한 표현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성질을 저작물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저작물성이란 창작성 또는 원작성을 말한다(오승중, 2016). 이는 그 표현물이 독창적이며 다른 표현물을 베끼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이와 같은 저작물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자체가 곧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은 새로운 연구성과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무수한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지로 학술논문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그 저자는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부여하는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된 그 자체로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 그 저작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저작물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 될 때 이에 대한 복제품이 허락 없이 유통되어 이를 최초로 상품화한 출판사 등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저작권은 중요해진다. 따라서 경제활동으로서 창작물을 생산한 저자뿐만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사에게도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원래의 저작권 소유자인 창작자와 출판사 상호간에 일치하는 이익에 맞추어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진다.

학술논문의 생산과 유통은 창작자와 출판사가 상호간에 일치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출판물과는 좀 다르다. 학술논문은 연구자들이 학문을 수행하는 과정의 한 결과물인데 이들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연구자 자신의 지적인 만족이나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 등의 내적 요인과 동료집단에 의한 평가, 수상(prizes), 교수직, 급여인상 등의 외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Scheufen, 2015, pp. 45-46). 그러나 연구자 집단인 학회가 직접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문적인 출판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술지를 출판하는 경우라면 연구자가 논문을 출판하는 것과 그 목적이 서로 다르게 된다. 즉,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문의 성과가 가능한 널리 공개되고 확산될 때 외적 동기에 따른 만족이 높아지게 되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논문의 공개와 확산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이해를 조절하기 위하여 출판사는 논문투고자인 연구자로부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되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구자가 그 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절은 출판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지원 기관 등 학문의 성과를 널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구성주체들에 의하여 강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하는 연구자에게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에서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학술지 출판사의 저작권 규정에서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Gadd, Oppenheim, Proberts(2003)가 80종의 학술지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영미권 학술지에서 저작권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90%이며 42.5%만이 다양한 조건으로 논문의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 오픈액세스가 확산된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학술지에서 저자의 셀프아카이빙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판사 버전의 논문 배포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출판 후 5년간의 엠바고 기간을 두는 등 여전히 출판사의 저작권 규정은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배포하는데 호의적이지는 않은 경우도 있고(Laakso & Lindman, 2016),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Schlosser, 2016).

우리나라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는 영미권 학술지와 매우 다르다. 2005년 이재민의 연구에 따르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와 학회 등의 출판기관 간에 저작권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69.2%였고, 2008년 홍재현의 연구에서는 66.2%였으며, 최윤희(2013)의 연구에서는 41%였다. 이것은 국내 학술지를 학회 등이 오랜 기간 비영리적 목적으로 출판해왔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회는 학술지나 개별 학술논문을 상품화하지 않았고 따라서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근거로 논문의 복제 등을 통제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술지 원문이 상업적인 DB 업체 또는 공공기관의 오픈액세스 아카이브를 통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현재의 상황은 학회 등의 출판기관에 이전과는 다른 저작권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상업적인 DB 업체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은 학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원문서비스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 관리단체가 분쟁조정 신청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홍재현, 2008). 또한 최근에는 상업적인 DB 업체가 공공기관의 오픈액세스 사업을 공격하는 근거로 학회의 저작권 관리 부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즉, 학회는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으므로 공공기관이 학회와 계약을 맺고 오픈액세스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이개호, 2015). 이러한 주장은 물론 학술논문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학술논문 공개를 차단하고 상업적인 DB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

써 논문유통을 통한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업체의 전략임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분쟁의 과정 즉, 학술논문을 어떻게 출판하고 유통 및 이용시킬 것인가의 논의에서 정작 학술논문의 일차적 저작권자인 저자와 논문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학회가 지속적으로 주변화 된다는 점이다(우지숙, 2008). 학회가 스스로 그들이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학회와 연구자는 이러한 주변화로부터 다시 학술커뮤니케이션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의 학술지 논문이 상업적인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학술지 저작권 관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술지 저작권 관련 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 첫째,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명확하고 양도되는 권리가 명확한가?
- 둘째, 저작권 양도 후 논문 이용과 관련하여 저자에게 허락되는 사항이 명확한가?
- 셋째, 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작권 관련 용어 사용 등 관리적 측면의 문제는 없는가?
- 넷째, 위의 사항이 학문분야와 발행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양도대상은 그 권리 전부이거나 또는 각각의 지분권 중 일부일 수 있다. 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조건 하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양도가 준물권적 성질을 지닌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용허락이란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소유한 상태에서 타인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해 주는 행위이다(오승중, 2016).

조사대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하 등재지)의 저작권 관련 문서이다. 2015년 7월 31일 기준 등재지는 1,902종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학술지 발행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없었던 12종을 제외한 1,890종(인문학 486, 사회과학 646, 예술체육 101, 복합학 63, 자연과학 105, 공학 212, 의약학 208, 농수해양 69종)을 조사하였다. 이는 등재지의 99.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등재지 전체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등재지의 저작권 정책은 각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일부 학술지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저작권 관련 규정에 접근하기 위하여 로그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로그인 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저작권 관련사항은 학술지에 따라 논문투고 및 발행과 관련한 규정, 발간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이하 '규정') 등 다양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을 모

두 조사하였다. 또한 저작권양도동의서와 이용허락동의서(이하 '동의서') 규정도 조사하였다.

수집된 '규정'과 '동의서'를 분석하여 저작권 명시 유무, 저작권소유주체 유형, 권리귀속이 밝혀져 있는 문서 유형, 권리귀속규정 및 동의서의 명칭, 저작권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양도 여부,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사항을 조사한 후 엑셀파일에 이를 입력한 후 각 항목별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학술지의 주제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8개 주제분야(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학, 농수해양학)를 사용하였고, 발행기관 유형은 재단의 등재학술지 리스트에 제시된 발행기관명에 따라 학회, 대학(연구소 및 단과대학),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출연연구소), 기타(재단, 협회 등 비영리단체, 영리기업)로 구분하였다.

4. 학술지 저작권 관리 현황 분석

4.1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가?

4.1.1 귀속주체를 밝히고 있는가?

학술논문은 고도의 지적 창작물로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1차적으로는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자이다. 따라서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인 저자로부터 복제와 배포 등의 출판과 관련한 저작권산권을 양도 받거나 혹은 저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특

히, 발행기관이 디지털 방식의 유통 즉, 학술논문 DB를 통하여 논문을 제공하려면 이와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등재지의 '규정' 또는 '동의서'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학술지의 67.4%인 1,237종이었으며, 그 외 32.6%(617종)는 이를 밝히고 있지 않았다. 권리귀속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작성자인 논문의 저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여부는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표 1〉 참조). 의학학 분야는 이 분야 학술지의 94.7%(197종)가 저작권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어 귀속 주체 명시율이 가장 높았다. 공학 분야는 이 분야 등재지의 86.8%(184종), 자연과학 분야는 85.7%(90종)가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었다. 인문, 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저작권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이 분야 학술지의 62.8%(406종)가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었으며, 예술체육 분야도 이와 유사한 정도였다. 인문학 분야는 49.8%(242종)만이 귀속 주체를 밝히고 있어 전체 학문 분야 중에서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발행기관별로는 학회에서 출판하는 학술지가 대학 및 공공기관 등의 학술지보다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시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학회출판 학술지의 69.4%(1,054종)가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있었고, 대학과 공공기관의 학술지는 각각 59.1%(156종), 60.6%(40종)로 학회출판 학술지에 비해 약 10%정도 낮았다.

〈표 1〉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 명시 현황

구분	명시 유무	있음		없음		계
		종	%	종	%	
주제분야	인문학	242	49.8	244	50.2	486
	사회과학	406	62.8	240	37.2	646
	예술체육	62	61.4	39	38.6	101
	복합학	37	58.7	26	41.3	63
	자연과학	90	85.7	15	14.3	105
	공학	184	86.8	28	13.2	212
	의약학	197	94.7	11	5.3	208
	농수해양	55	79.7	14	20.3	69
	계	1,273	67.4	617	32.6	1,890
발행기관	학회	1,054	69.4	465	30.6	1,519
	대학	156	59.1	108	40.9	264
	공공기관	40	60.6	26	39.4	66
	기타	23	56.1	18	43.9	41
	계	1,273	67.4	617	32.6	1,890

4.1.2 누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학술논문에 대한 1차적인 저작권자는 논문을 작성한 저자이지만, 이 권리는 양도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또한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를 조사한 결과 학회, 대학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학술지 발행자측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저자가 소유한 경우,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이중에서 발행자측과 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다양하였다. 크게는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구분하지 않고 발행기관과 저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명시한 경우와 지분권에 따라 권리귀속 주체를 구분한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전송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경우,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전송권만을 학회가 소유하는 경우, 편집

저작권만 학회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편집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자 또는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사용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경우,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대학과 DB 업체에 전송권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귀속주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발행자 측이 소유하는 경우는 1,153종으로 전체 학술지의 61%였으며, 저자가 소유하는 경우(54종, 2.9%)와 저자와 발행자측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59종, 3.1%)는 극히 드물었다. 즉, 권리 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 대다수는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저자가 권리 귀속주체인 경우는 전 분야에서 매우 낮았지만, 그중 의약학 분야는 특히 낮았으며(1종, 0.5%) 이에 비해 사회과학 분야는

〈표 2〉 등재지의 저작권 귀속 주체

구분 \ 귀속주체		발행자측 종(%)	저자 종(%)	공동 종(%)	기타 종(%)	명시안함 종(%)	계(종)
주제분야	인문학	210(43.2)	4(0.8)	28(5.8)	0(0)	244(50.2)	486
	사회과학	344(53.3)	37(5.7)	21(3.3)	4(0.6)	240(37.2)	646
	예술체육	50(49.5)	4(4)	8(7.9)	0(0)	39(38.6)	101
	복합학	34(54)	0(0)	1(1.6)	2(3.2)	26(41.3)	63
	자연과학	86(81.9)	2(1.9)	1(1.0)	1(1.0)	15(14.3)	105
	공학	180(84.9)	4(1.9)	0(0)	0(0)	28(13.2)	212
	의약학	196(94.2)	1(0.5)	0(0)	0(0)	11(5.3)	208
	농수해양	53(76.8)	2(2.9)	0(0)	0(0)	14(20.3)	69
	계	1,153(61)	54(2.9)	59(3.1)	7(0.4)	617(32.6)	1,890
발행기관	학회	973(64.1)	30(2.0)	46(3.0)	5(0.3)	465(30.6)	1,519
	대학	123(46.6)	20(7.6)	11(4.2)	2(0.8)	108(40.9)	264
	공공기관	35(53)	3(4.5)	2(3.0)	0(0)	26(39.4)	66
	기타	22(53.7)	1(2.4)	0(0)	0(0)	18(43.9)	41
	계	1,153(61)	54(2.9)	59(3.1)	7(0.4)	617(32.6)	1,890

상대적으로 높았다(37종, 5.7%). 저자와 발행자측이 권리를 공동 소유한 경우는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1종 있었으나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인문학 분야(28종, 5.8%)에 많았다.

발행기관에 따라서도 논문의 귀속주체는 거의 모두 발행자 측이었으나, 이중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20종, 7.6%)는 학회(30종, 2.0%)나 공공기관(3종, 4.5%)보다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4.2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 소유주체를 명시하고 있는가?

4.2.1 문서의 유형 및 명칭

권리귀속의 근거는 다양한 명칭의 ‘규정’ 또는 ‘동의서’에 밝혀져 있다. 조사결과 ‘규정’에

만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608종(32.2%)이었으며, ‘동의서’에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132종(7.0%)이었다. 이 두 문서에 모두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533종(28.2%)이었다. 즉, ‘동의서’보다는 다양한 ‘규정’을 통하여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들이 2배 정도 많았다(〈표 3〉 참조).

학문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규정’, 과학기술 분야는 ‘규정’과 ‘동의서’ 모두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의약학 분야의 경우 ‘규정’과 ‘동의서’ 모두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이 분야 학술지의 72.2%로 매우 높았다. 발행기관별로는 학회와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등재지는 ‘규정’ 또는 ‘규정’과 ‘동의서’ 모두에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비율이 유사한 정도였으나 대학에서 발간한 등재지는 ‘규정’을 통해서만 귀속주체를 밝히고

〈표 3〉 권리귀속이 밝혀져 있는 문서

구분	권리귀속 문서	'규정'만 있음		'규정'과 '동의서'		'동의서'만 있음		없음		계 (종)
		종	%	종	%	종	%	종	%	
주제분야	인문학	191	39.3	37	7.6	14	2.9	244	50.2	486
	사회과학	253	39.2	98	15.2	55	8.5	240	37.2	646
	예술체육	39	38.6	19	18.8	4	4.0	39	38.6	101
	복합학	21	33.3	9	14.3	7	11.1	26	41.3	63
	자연과학	18	17.1	68	64.8	4	3.8	15	14.3	105
	공학	39	18.4	120	56.6	25	11.8	28	13.2	212
	의약학	33	15.9	151	72.6	13	6.3	11	5.3	208
	농수해양	14	20.3	31	44.9	10	14.5	14	20.3	69
	계	608	32.2	533	28.2	132	7.0	617	32.6	1,890
발행기관	학회	471	31.0	475	31.3	108	7.1	465	30.6	1,519
	대학	105	39.8	37	14.0	14	5.3	108	40.9	264
	공공기관	18	27.3	15	22.7	7	10.6	26	39.4	66
	기타	14	34.1	6	14.6	3	7.3	18	43.9	41
	계	608	32.2	533	28.2	132	7.0	617	32.6	1,890

있는 경우가 '규정'과 '동의서' 모두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문서는 투고규정, 발간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심사규정, 윤리규정, instruction for author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투고규정'이라는 문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전체 학술지 중 449종(23.8%)으로 가장 많았다. '투고규정'에 대한 영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instruction for author'라는 문서에 밝혀져 있는 경우는 280종(14.8%), '편집위원회 규정'에는 149종(7.9%)이었다. 이외에 발간규정에 밝히고 있는 경우는 89종(4.7%), 심사규정에는 34종(1.8%)이 있었다. 예외적으로 윤리규정에 밝히고 있는 경우(9종, 0.5%)도 있었다. 기타 문서로는 editorial policy, about this journal, submission guidelines, 규정, 운영규정, 원고모집, 원고작성요령, 학회지 규정, 회칙 등 너무나 다양한 명칭의 문서에 저

작권 귀속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131종(6.9%)이었다.

'규정'은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저작권 귀속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공지하는 것인 반면에 '동의서'는 논문투고자가 직접 작성하여 학술지 발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의서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양도동의서는 논문투고자가 발행기관측에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고, 이용허락동의서는 저작권을 저자가 보유하고 발행기관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논문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기 위한 문서이다.

등재지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양도를 위한 동의서 명칭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copyright transfer,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form, statement of copyright transfer, transfer of copyright agreement,

agreement of copyright transfer, submission application & copyright transfer form 등)라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학술지가 268종(14.2%)으로 가장 많았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에 대한 한글 명칭에 해당하는 저작권이양동의서(저작권양도동의서, 저작권양도합의서,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명시에 대한 동의서,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권이전동의서, 논문투고원 및 저작권위임동의서, 연구윤리규정준수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학술지는 189종(10.0%)이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보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저작재산권양도확인서(또는 지식소유권 위임서)를 사용하는 학술지도 20종(1.1%) 있었다. 또한 저작권 귀속사항을 논문투고신청서(논문투고동의서, 논문게재동의서, 논문기고신청서, 원고투고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65종(3.4%),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논문연구윤리서약서 및 위임동의서, 연구윤리동의서, 연구윤리 및 저작권동의서,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29종(1.5%)이었다.

저작물이용동의서(논문사용권등 위임동의서, 학술논문저작물이용허락서, 정보공개 및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서,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에 귀속 사항을 밝힌 경우는 11종(0.6%)이었다.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영문 혹은 국문명칭의 문서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동의서 명칭들은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Publishing Agreement, Copyright Form, Agreement of Authorship, Originality, and Copyright Transfer, Author Form, 논문사용권 등 위임장,

원고계약서, 원문제공동의서 등이다.

4.2.2 저작권 귀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

‘규정’과 ‘동의서’에는 저작권이라는 용어 이외에 이와 유사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저작권이라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가 466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대한 영문명인 copyright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는 319종(16.9%)이었다.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권이라는 용어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학술지는 115종(6.1%)이었다. 저작권(또는 디지털저작권)이라는 용어와 함께 복제권(또는 디지털복제) 또는 전송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술지는 146종(7.7%)이었다. 이외에 저작권법상 용어가 아닌 논문사용권, 이용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73종(3.9%), 편집저작권 또는 출판소유권, 편집출판권, 출판권 등 편집이나 출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54종(2.9%)이었다. 지식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는 20종(1.1%)이었다. 기타로는 permanent property, publication rights, ownership, 디지털정보권한 등이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저작권과 판권, 판권과 사용권 등 두 개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표 4〉 참조).

학문 분야별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copyright라는 용어가, 인문사회 및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공학 분야의 경우 이 두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발간주체별로는 모든 경우에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

〈표 4〉 권리귀속을 위해 사용된 용어

구분	용어	저작권		copy-right		판권		지적 소유권		저작권, 전송권		저작권, 편집저작권		논문 사용권		기타		규정하지 않음		계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주제 분야	인문학	139	28.6	2	0.4	14	2.9	14	2.9	43	8.8	7	1.4	1	0.2	22	4.5	244	50.2	486
	사회과학	153	23.7	32	5.0	74	11.5	4	0.6	76	11.8	19	2.9	23	3.6	25	3.9	240	37.2	646
	예술체육	33	32.7	1	1.0	2	2.0	2	2.0	8	7.9	11	10.9	2	2.0	3	3.0	39	38.6	101
	복합학	13	20.6	7	11.1	5	7.9	0	0.0	5	7.9	0	0.0	5	7.9	2	3.2	26	41.3	63
	자연과학	17	16.2	49	46.7	6	5.7	0	0.0	3	2.9	1	1.0	11	10.5	3	2.9	15	14.3	105
	공학	67	31.6	75	35.4	10	4.7	0	0.0	4	1.9	3	1.4	16	7.5	9	4.2	28	13.2	212
	의약학	33	15.9	127	61.1	0	0.0	0	0.0	6	2.9	13	6.3	10	4.8	8	3.8	11	5.3	208
	농수해양	11	15.9	26	37.7	4	5.8	0	0.0	1	1.4	0	0.0	5	7.2	8	11.6	14	20.3	69
	계	466	24.7	319	16.9	115	6.1	20	1.1	146	7.7	54	2.9	73	3.9	80	4.2	617	32.6	1,890
발행 기관	학회	376	24.8	293	19.3	100	6.6	13	0.9	108	7.1	40	2.6	64	4.2	61	4.0	464	30.5	1,519
	대학	66	25.0	18	6.8	12	4.5	6	2.3	26	9.8	12	4.5	5	1.9	11	4.2	108	40.9	264
	공공기관	11	16.7	6	9.1	3	4.5	1	1.5	8	12.1	1	1.5	4	6.1	6	9.1	26	39.4	66
	기타	13	31.7	2	4.9	0	0.0	0	0.0	5	12.2	1	2.4	0	0.0	2	4.9	18	43.9	41
	계	466	24.7	319	16.9	115	6.1	20	1.1	147	7.8	54	2.9	73	3.9	80	4.2	616	32.6	1,890

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학회출판 학술지의 경우 copyright, 대학이나 공공기관 출판 학술지의 경우 저작권, 전송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4.3 어떤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가?

4.3.1 양도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표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개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개의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저작권법 제14조 제1항)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따라서 투고논문에 대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곧 저작재산권 전체 혹은 저작재산

권 중 특정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말한다.

등재지 중에서 저작권 귀속 주체를 '규정'에 밝히고 있는 경우는 1,141종이었고, '동의서'에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665종이었다. 각각의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명시하며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단, 저작권법상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미상 특정 지분권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분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규정'에서 지분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261종(22.9%)에 불과하였다. 그 외의 880종(77.1%)은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한다는 등의 단순한 기술만 있었다. '동의서'의 경우에는 지분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199종, 29.9%) 없는 경우(336종, 50.5%)보다 더 적었다. 그 외 130종(19.5%)의 학술지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서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표 5〉 참조).

〈표 5〉 양도대상 지분권 명시 유무

구분	지분권 명시 유무	권리귀속규정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있음		없음		소계	있음		없음		확인안됨		소계
		종	%	종	%	종	종	%	종	%	종	%	종
주제분야	인문학	64	28.1	164	71.9	228	11	21.6	24	47.1	16	31.4	51
	사회과학	98	27.9	253	72.1	351	79	51.6	48	31.4	26	17.0	153
	예술체육	21	36.2	37	63.8	58	6	26.1	14	60.9	3	13.0	23
	복합학	12	40.0	18	60.0	30	7	43.8	6	37.5	3	18.8	16
	자연과학	14	16.3	72	83.7	86	19	26.4	28	38.9	25	34.7	72
	공학	28	17.6	131	82.4	159	38	26.2	84	57.9	23	15.9	145
	의약학	19	10.3	165	89.7	184	29	17.7	105	64.0	30	18.3	164
	농수해양	5	11.1	40	88.9	45	10	24.4	27	65.9	4	9.8	41
	총계	261	22.9	880	77.1	1,141	199	29.9	336	50.5	130	19.5	665
발행기관	학회	191	20.2	755	79.8	946	160	27.4	306	52.5	117	20.1	583
	대학	50	35.2	92	64.8	142	21	41.2	20	39.2	10	19.6	51
	공공기관	12	36.4	21	63.6	33	14	63.6	7	31.8	1	4.5	22
	기타	8	40.0	12	60.0	20	4	44.4	3	33.3	2	22.2	9
	계	261	22.9	880	77.1	1,141	199	29.9	336	50.5	130	19.5	665

분야별로는 ‘규정’의 경우 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지분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 많았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보다는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규정 문서에 지분권을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발행기관별로는 ‘규정’이나 ‘동의서’ 모두에 지분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명시된 경우보다 많았다. 규정과 동의서 모두에서 대학이나 공공기관 발행 학술지가 학회 발행 학술지보다 지분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4.3.2 양도하고 있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규정’이나 ‘동의서’에 양도대상이 되는 지분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예컨대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DB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저작권 및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복사, 전송권 포함) 등을 위임’ 등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지분권을 모두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학술지의 4.4%(83종)에 불과하였으며,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만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0.4%(8종)와 2.0%(38종)에 그쳤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정’

〈표 6〉 ‘규정’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이 명시된 현황

구분	권리	복제권 + 공중송신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
		종	%	종	%	종	%	종	%	
주제분야	인문학	29	6.0	0	0.0	6	1.2	451	92.8	486
	사회과학	43	6.7	1	0.2	25	3.9	577	89.3	646
	예술체육	4	4.0	0	0.0	1	1.0	96	95.0	101
	복합학	4	6.3	0	0.0	0	0.0	59	93.7	63
	자연과학	0	0.0	1	1.0	2	1.9	102	97.1	105
	공학	2	0.9	5	2.4	0	0.0	205	96.7	212
	의약학	1	0.5	1	0.5	4	1.9	202	97.1	208
	농수해양	0	0.0	0	0.0	0	0.0	69	100.0	69
	계	83	4.4	8	0.4	38	2.0	1,761	93.2	1,890
발행기관	학회	59	3.9	8	0.5	33	2.2	1419	93.4	1,519
	대학	15	5.7	0	0.0	4	1.5	245	92.8	264
	공공기관	5	7.6	0	0.0	0	0.0	61	92.4	66
	기타	4	9.8	0	0.0	1	2.4	36	87.8	41
	계	83	4.4	8	0.4	38	2.0	1,761	93.2	1,890

에 지분권이 명시되어 있는 학술지가 261종이었는데 결국 이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명시한 규정은 약 32%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문분야별로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 비하여 인문학, 사회과학 및 복합학 분야에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동시에 명시한 경우가 더 많았다. 발행기관별로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학회보다 더 많았다(〈표 6〉 참조).

4.4 저자에게는 무엇이 허락되고 있는가?

4.4.1 저자의 권리가 밝혀져 있나?

논문 투고시 저자가 발행기관 측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할 경우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복제나 공중송신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국외의 출판사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후 오픈 액세스 리포지토리에 셀프아카이빙할 수 있는

지 등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을 저작권양도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등재지 중에서 1,153종의 학술지가 논문의 저작권을 발행자 측이 양도받고 있었다. 이 사항을 ‘규정’에 명시한 경우가 1,033종, ‘동의서’에 명시한 경우가 507종이었다. 이들 학술지에서 저자에게 허용되는 사항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저자에게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CCL을 적용하거나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학술지에 CCL을 적용하는 경우는 설령 저작권이 발행자측에 양도되더라도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저자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가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저자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규정’에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학술지가 거의 대부분(897종, 86.8%)이었다. 저자에 대하여 허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80종(7.7%), 출판사 정책에 따르거나 CCL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56종(5.4%)이었다(〈표 7〉 참조).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CCL이나 출판사 정책에 따른다고 명시된 경우는 의약학 분야의 저널에 많았고, 저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예술체육, 인문학, 복합학, 자연과학 분야에 많았다. 발행기관별로는 대학발행 학술지가 학회나 공공기관 학술지보다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사항을 밝힌 경우가 많았다.

‘동의서’에도 저자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지만(405종, 79.9%) ‘규정’에 서보다는 비교적 적었다. ‘동의서’가 있는 학술지 중 저자의 권리를 밝힌 경우는 101종(19.9%)으

로 ‘규정’에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문분야별로는 인문, 예술, 복합학 분야는 권리귀속 규정,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분야는 ‘동의서’에 저자의 권리를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약학 분야에는 ‘규정’에 CCL 정책에 따른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발행기관별로는 대학발간 학술지는 ‘규정’에 학회발간 학술지는 ‘양도동의서’에 저자의 권리를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

4.4.2 저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자에게 허용되는 권리를 ‘규정’에 명시한 80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는 본인 논문 이용시 학회 등에 서면으로 허락을 받거나, 이용 전에 학회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이다. ‘저자는 논문 내용 재사용시 허락받아야 함’, ‘저자는 논문 전체 복제 시 학회에 허락받아야 함’, ‘저자는 논

〈표 7〉 발행자측에 권리양도 후 저자가 가지는 권리명시 여부

구분	저자의 권리명시 여부	권리귀속규정								저작권양도 및 이용허락동의서							
		있음		CCL/출판사 정책 따름		없음		계		있음		CCL/출판사 정책 따름		없음		계	
		종	%	종	%	종	%			종	%	종	%	종	%		
주제 분야	인문학	26	13.3	0	0.0	170	86.7	196		1	2.9	0	0.0	33	97.1	34	
	사회과학	16	5.4	2	0.7	281	94.0	299		5	4.7	0	0.0	102	95.3	107	
	예술체육	8	17.0	0	0.0	39	83.0	47		1	5.6	0	0.0	17	94.4	18	
	복합학	4	14.8	1	3.7	22	81.5	27		0	0.0	0	0.0	12	100	12	
	자연과학	8	9.8	4	4.9	70	85.4	82		15	33.3	1	2.2	29	64.4	45	
	공학	12	7.7	8	5.2	135	87.1	155		37	30.6	0	0.0	84	69.4	121	
	의약학	4	2.2	36	19.7	143	78.1	183		31	23.1	0	0.0	103	76.9	134	
	농수해양	2	4.5	5	11.4	37	84.1	44		11	30.6	0	0.0	25	69.4	36	
	계	80	7.7	56	5.4	897	86.8	1,033		101	19.9	1	0.2	405	79.9	507	
발행 기관	학회	60	6.9	51	5.9	758	87.2	869		96	21.1	1	0.2	358	78.7	455	
	대학	15	13.2	4	3.5	95	83.3	114		2	7.1	0	0.0	26	92.9	28	
	공공기관	2	6.5	1	3.2	28	90.3	31		1	5.9	0	0.0	16	94.1	17	
	기타	3	15.8		0.0	16	84.2	19		2	28.6	0	0.0	5	71.4	7	
	계	80	7.7	56	5.4	897	86.8	1,033		101	19.9	1	0.2	405	79.9	507	

문 일부 혹은 요약물을 다른 간행물에 사용할 수 있으나 서면허락을 얻어야 함'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주로 게재된 논문을 다른 미디어로 재출판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둘째는 저자에게 특정한 이용에 대하여 미리 허락한다는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앞의 유형보다 더 많았다. '저자는 본인 논문 사용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함', '저자는 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비영리목적의 학술 또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 가능', '저자는 연구교육용으로 논문 사용가능', '저자는 표시된 단체, 저자들의 웹사이트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저자가 교과서등 서적과 논문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함' 등이 그 예이다. 매우 예외적이지만 '저자는 웹사이트에 저자생산 버전의 셀프아카이빙, 펀더의 요청이나 법적인 무에 따라 (펀더가 지정한) 리포지토리나 기관의 리포지토리에 저자버전을 출판 후 12개월 후에 기탁할 수 있음'과 같이 셀프아카이빙에 대하여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의서'에서도 저자에 대하여 명시해 놓은 내용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인 논문 이용시 학회 등에 허락', '셀프아카이빙, 기관리포지토리 기탁시 학회에 요청' 등과 같이 명시한 등재지(33종)도 있었으나 더 많은 학술지(68종)에서 셀프아카이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예컨대 '저자와 소속기관은 개인/비영리적으로 개정, 2차저작물, 발표, 배포할 권리 소유', '비영리 목적으로 저자 홈페이지 업로드 가능', '저자는 저자버전을 자신 웹사이트나 기관리포지

토리에 셀프아카이빙 가능. 기금지원기관이 지정한 리포지토리에 기금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12개월 후에 기탁가능하나 출판사 버전은 불가함', '저자는 고용기관 이외의 곳에 체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토카피가능하고 한부의 전자사본을 만들 수 있음. 프리프린트 버전을 퍼블릭 서버에 포스팅 가능, 출판된 논문은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네트워크에서만 포스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회의 서면허락을 받아야 함', '저자는 무료로 부분, 전체를 향후 발간할 책, 강의에 사용가능, 비매용으로 자신이 이용하기 위하여 논문복제가능', '저자는 프리프린트를 공개된 웹사이트에 포스트했을 경우 업데이트되거나 최종버전으로 바뀌어서는 안됨' 등이 그 예이다.

5. 논의 및 제언

5.1 저작권에 침묵하는 학술지의 문제

이전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술지가 저작권 소유주체를 밝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게재 논문의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밝히지 않는 학술지가 등재지의 32.6%(617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학 분야 학술지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학술지의 논문에 대한 저작권자는 당연히 논문의 저자가 된다. 학회가 투고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여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인 논문투고자로부터 복제와 배포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지만 등

재지의 32.6%에 해당하는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는 학회 등의 기관은 이러한 권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은 다분히 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권리소유자가 저작물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복제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각 권리에서 규정한 방식의 이용을 권리소유자만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복제 등의 방식에 의한 이용을 배제시킨다. 따라서 권리소유자는 해당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배제된 누군가가 이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이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작권료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출판하는 목적이 이러한 이익의 추구하고 밀접할수록 불가피하게 저작권의 관리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 학술지의 대다수가 여전히 비영리적인 학회에 의하여 출판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는 영리적인 원문 DB 업체를 통하여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학술지에서 저작권 소유주체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회는 DB업체와는 달리 학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저작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학술지에 게시된 논문을 저자 이외의 제3자가 재사용하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컨대 학회가 게재된 논문을 영리 목적의 DB 혹은 오픈엑세스 DB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논문저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논문의 저자는 어떠한 권리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제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학술지를 출판하는 행위는 게재된 논문을 예상되는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현대 사회에서 그 제공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묵은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5.2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학회에 귀속한다'는 규정의 한계

'규정'이나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양도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규정' 880종(77.1%), '동의서' 336종(50.5%)). 즉,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학회에 귀속한다'는 한 줄로 된 문구를 사용하여 저작권 귀속을 밝히고 있는 등재지가 많았다. 앞서 논의하였던 '침묵하는 학술지'와는 달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도 저작권 양도를 명시하는 학술지는 게재논문의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양도받아 학회가 저작재산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려는 최소한의 소극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처럼 관례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날로그 및 무료제공 방식을 예정한 것이지 디지털화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유료제공 방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⁴⁾ 따라서 만일 학회가 논문을 상업적인 DB

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07카합312 학술저작물서비스금지가처분 결정

에 제공하여 유료화할 목적이라면 저작권양도 계약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권리를 양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등재지 중 상당수가 상업적인 원문DB 업체를 통하여 논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례적인 방법으로만 권리양도를 선언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나 대학의 연구소등은 상용 DB 업체에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며, 상용DB 업체 또한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용 DB업체는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학회가 권리자로부터 정확하게 저작권을 양도받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학회의 저작권 양도가 증가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3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의 문제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의 대다수는 현재 상업적인 DB 업체 또는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또는 학회나 공공기관 등 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재산권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과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지 중에서 '규정'에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양도받겠다고 명시한 경우는 전체 등재지의 6.8%(129종)에 불과하다. 학술지 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논문 투고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하는 권리는 다양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하여 7가지 저작재산권 모두를 양도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만 양도받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형식을 그대로를 영리 혹은 비영리목적으

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저자가 권리를 소유하는 학술지라면 저자가 학회, 영리목적의 DB업체, 비영리 오픈액세스 아카이브 운영기관이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도록 학술지 저작권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CCL 등의 라이선스를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학회가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저자로부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명확히 양도받아야 할 것이다. 즉, 학회가 반드시 저작권을 저자로부터 양도받을 필요는 없다.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양도보다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싶어 하고 논문 재사용 요청에 대한 허가도 학회보다는 저자가 직접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Hoorn & Graaf, 2006) 이러한 의견을 존중하여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학회의 정책에 맞게 학술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4 저자에게 허용되는 권리와 오픈액세스

등재지의 저작권 소유주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는 전체 학술지의 2.9%(59종)이고 발행자측이 소유한 경우는 61%(1,153종)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이 지분권별로 양도되는 경우보다 저작권 전체를 학회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언급이 없이 저자가 학회 등 발행자측에 저작권을 양도하면 저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발행자측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오픈엑세스가 등장하면서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기금지원기관 또는 저자가 자발적으로 각종 리포지토리에 자신의 논문을 셀프아카이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국외의 학술지 출판사는 저자가 출판사에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결과 저작권을 발행자측에 양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재지 중에서 권리 양도 후 저자에 대한 허락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규정'의 경우 13.1%(136종), '동의서'의 경우 20.1%(102종)에 불과하였다. '규정'에서는 논문의 재출판, 다른 논문에 재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서는 발행기관측에 다시 서면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았다면 '동의서'에는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에 저자가 셀프아카이빙 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가 '규정'에서보다 많았다(68종).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 전체 학술지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80.4%의 학술지가 저자제출원고본이나 최종출판본을 셀프아카이빙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외 출판사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Laakso, 2014).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까?

오픈엑세스에서 셀프아카이빙은 이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저자가 자신의 논문을 공개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발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사실상 셀프아카이빙은 순수한 저자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저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저자의 논문출판을 위해 기금을 지원한 기관이 셀프아카이빙을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논문출판을 위하여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학술지를 찾아야 하고 이에 따라 학술지 출판사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는 이와 같은 그린오픈엑세스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학술지 전체를 KISTI나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 혹은 의학분야에 서처럼 학술연구단체에서 운영하는 오픈엑세스 아카이브에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별 연구자에 의한 논문단위별 셀프아카이빙이 아니라 학회 등 출판기관에 의한 학술지 단위별 아카이빙이다. 따라서 비록 많은 학술지와 논문이 오픈엑세스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에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규정이 마련되지 않아도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의 오픈엑세스 환경에서만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국내의 일부 대학에서 오픈엑세스 기관리포지토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의 학술논문이 주된 아카이빙 대상 저작물이다. 따라서 논문을 발표한 교수나 연구원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논문을 기관리포지토리에 아카이빙해야할 수 있다. 이때 저자가 해당 논문을 출판한 학회에 저작권을 온전히 양도하고 그 학회는 양도 후 저자의 셀프아카이빙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기관리포지토리에 자신의 논문을 아카이빙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학회에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관리포지토리가 아니라 저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논문의 원문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미 오픈엑세스 아카이브에 학술지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 저자에 의한 셀프아카이빙을 금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술지 출판기관이 논문을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리적인 원문DB업체가 논문을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배타적으로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최대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라면 저자의 다양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학술지 출판의 목적이라면 저자에 의한 다양한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셀프아카이빙에 대한 규정은 대상이 되는 논문의 버전(투고전 논문, 투고후 출판사 편집본, 최종 출판본 등)과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시점(출판 후 즉시, 출판후 6개월, 출판후 12개월 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규정은 특히 비영리 목적으로 출판되는 대학과 공공기관의 학술지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의 분석(<표 7> 참조)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서보다 오히려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학술지에 영리를 목적으로 발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5 용어의 모호함

저작권귀속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 또한 매우 모호하였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정확한 용어인 저작권, 복제권, 공중송신권이라는 용어 이외에 그 의미가 모호하고 법에 명시되

지 않은 판권, 디지털저작권, 논문사용권, 이용권, 편집저작권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설령 '동의서'나 '규정'에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모호하여 어떤 권리가 양도되고 무엇이 저자에게 남겨진 것이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작권양도합의서, 저작권이양 및 이해관계명시에 대한 동의서, 저작권이전동의서 등 저작권양도동의서에 해당하는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저작권법에 저작권 양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가장 공통되고 공식적인 계약서 형태인 영어의 'copyright transfer agreement'(Gadd, Oppenheim, & Proberts, 2003)에 해당하는 용어인 '저작권양도동의서'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6 개선 방안

5.6.1 학회 차원에서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권리귀속 규정의 명확화

학회는 학술지 출판 및 유통 목적에 맞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학술지를 영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통의 확산 등을 위하여 영리적 DB 업체에 제공할 의도가 있다면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논문투고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할 것이다. 또는 무료로 가능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의도라면 저작권을 저자가 소유하되, 학회를 비롯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복제, 공중송신의 방식으로 논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혀야 할 것이다. 결국 게재

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소유주체를 명시하는 것은 연구자가 논문투고여부를 결정하거나 향후 자신의 논문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거나 또는 개별이용자나, 도서관, 상업적인 기관에서 논문을 이용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학술지에 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5.6.2 저작권 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 명시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의 경우에는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권 재산을 양도 받아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규정이나 저작권 양도 동의서 상에 저작재산권 양도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내용과 단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OAK 사업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기관 리포지토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자 셀프 아카이빙 및 기관 리포지토리를 통한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과 단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학회 편집인들은 저작권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저작권 관련 규정이나 저작권양도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단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이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예를 들어 제시하면 4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때 양도 내용과 단서조항, (2) 저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후, 원저작자로서 가지는 권리 범위와 조건 및 제한, (3) 논문명, 저자명, 저자날인, 날짜, (4) 기타(학회의 특이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학회들은 자신들이 저

작권 정책과 오픈엑세스 추진정도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저작권 규정과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6.3 학술지 논문의 오픈엑세스를 위한 저작권자별 CCL 유형 선택 모형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체계 내에서 저작권자에 따라 CCL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저자가 저작권자일 경우 저자가 CCL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저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저작권자인 저자가 CCL을 선택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별로 CCL을 다르게 채택할 경우, 하나의 학술지에 다양한 CCL이 포함되어 학술지 단위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학회가 저작권자일 경우 학회가 CCL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저작재산권자가 된 학회가 CCL을 선택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와 학회간의 저작권 양도계약이 필요하고 학회가 학술지 논문의 원문서비스 방식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경우 저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는 저자가 저작권자일 경우 저자는 학회가 선택한 CCL 유형을 수용하는 것이다. 저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대신 학회가 채택한 CCL 정책을 저자가 수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저작권을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셀프 아카이빙 권리를 확보하고 학회는 투고된 논문들을 하나의 CCL 유형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 현재 PLoS나 BoiMed Central 등의 오픈 액세스 출판사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5.6.4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의 대외적 공시

국내 학회의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국내 저자와 이용자가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 명확한 이용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SHERPA/RoMEO에 학회 차원에서 저작권 및 오픈엑세스 정책을 등록함으로써 해외 저자와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이용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픈엑세스 학술지 일 경우에는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 해당 학술지를 등재함으로써 확고한 오픈엑세스 학술지로서 대외적 인정을 받을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이며, 셀프 아카이빙 정책이 있는지, 셀프 아카이빙 정책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고논문이 어떤 수준에서 오픈엑세스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학술지 논문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용조건하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김규환, 2014).

6.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주요 학술지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

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으며,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투고와 동시에 저작권이 양도된다'는 모호한 문구만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학술지는 전체 등재지의 61%였는데 이 중에서 '동의서'를 통하여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사항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102종('동의서' 사용 학술지의 20.1%), '규정'을 통하여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136종('규정' 사용 학술지의 13.1%)에 불과하였다.

저작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즉, 논문의 저작권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발행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아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무엇이며 양도 후 원저자인 저자에게 논문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허락할 것인가 등이다. 이는 곧 학술지 그 발행기관이 학술지의 논문을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논문투고자와 이용자에게 이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발행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이 어떠한 모든 학술지에 저작권 정책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등재지 전체 학술지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이재민, 2005; 홍재현, 2008)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 또는 학술지의 원문서비스 유형 예컨대, 상업적인 DB업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학술지와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의 차이 등 세부적인 분석은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환 (2014). 국내 학회의 오픈엑세스 수용과 추진방식에 대한 제안. 정보관리학회지, 31(3), 111-131.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111>
- 오승중 (2016).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우지숙 (2008). 저자는 어디에 있는가? 국내 학술논문의 저작권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사회, 16(3), 92-129.
- 이개호 (2015). 학술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학술논문 무료공개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울: 국회.
- 이재민 (2005). 오픈엑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윤희 (2013).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홍재현 (2008). 국내 학술지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귀속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431-463.
<https://doi.org/10.16981/kliss.39.1.200803.431>
- Gadd, E., Oppenheim, C., & Proberts, S. (2003). RoMEO studies 4: An analysis of journal publishers' copyright agreements. Learned Publishing, 16(4), 293-308.
<https://doi.org/10.1087/095315103322422053>
- Hoorn, E., & Graaf, M. (2006). Copyright issues in open access research journals: The authors' perspective. D-Lib Magazine, 12(2).
<https://doi.org/10.1045/february2006-vandergraaf>
- Laakso, M. (2014). Green open access policies of scholarly journal publishers: A study of what, when, and where self-archiving is allowed. Scientometrics, 99(2), 475-494.
<https://doi.org/10.1007/s11192-013-1205-3>
- Laakso, M., & Lindman, J. (2016). Journal copyright restrictions and actual open access availability: A study of articles published in eight top information systems journals (2010-2014). Scientometrics, 109(2), 1167-1189. <https://doi.org/10.1007/s11192-016-2078-z>
- Poor, N. (2008). Copyright notices in traditional and new media journals: Lies, damned lies, and copyright noti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1), 101-126.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8.01433.x>
- Scheufen, M. (2015). Copyright versus open access: on the organis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 Switzerland: Springer.

Schlosser, M. (2016). Write up! A study of copyright information on library-published journal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Scholarly Communication*, 4, eP2110.
<http://dx.doi.org/10.7710/2162-3309.2110>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Yoonhyung (2013).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plan of journal articles in Kore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ong, Jae-Hyun (2008).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for open access and archiving of scholarly journal paper registered in Korean Research Founda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431-463.
<https://doi.org/10.16981/kliss.39.1.200803.431>

Kim, Gyuhan (2014). A proposal for the acceptance and process of open access in Korean socie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111-131.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111>

Lee, Gaeho (2015). Trends and future direction for scholarly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free access for scholarly articles. Seoul: National Assembly.

Lee, Jae Min (2005). Copyright possession and improving plan of scholarly journal paper in Korea: for the open access strateg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h, Seung-Jong (2016). Copyright law (4th ed). Seoul: Bakyounsa.

Woo, Ji-suk (2008). Where is the author?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pyright debate regarding scholarly articles. *Media and Society*, 16(3), 92-129.